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14호 2014. 10.31 (금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46호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47호	하동군 최첨관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048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049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하동군 조례 제2050호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	17
○ 하동군 조례 제2051호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	18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20호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9
-----------------	--------------------------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4-80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75차)	21
○ 하동군 고시 제2014-81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사	25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4-660호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30
○ 하동군 공고 제2014-669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2
○ 하동군 공고 제2014-670호	하동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59
○ 하동군 공고 제2014-674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60
○ 하동군 공고 제2014-681호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2
○ 하동군 공고 제2014-687호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166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1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46호

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제1조(「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체 없이”를 “2개월 내에”로 한다.

제2조(「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운행지역은 하동군 관할구역 안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운행 할 수 있다.
 1. 병원 이용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며, 그 기간에 대신 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414 호

제5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를 “의 환불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과기간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환급비율	50%	30%	10%	0%

제6조(「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50,000원”을 “250,000원”으로 한다.

제8조(「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9조(「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의 개정)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를 위한 경과기간은 2개월로 하고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의 공개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별표 제16호의 차 목 중 (1)에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별표 제18호의 자 목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별표 제19호의 차 목 중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숙박시설”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414 호

제10조(「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3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12조(「하동군 지하수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영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② 산정기준은 영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동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 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제6조제2항의 표 중 “수익계약”을 “경쟁입찰”로 하고,

제15조 중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하며, “15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5) 제 414 호

제14조(「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둔다.”를 “두되, 필요시 권역별 분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제16조(「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용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식용작물과 원예작물”을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버섯작물 및 뽕나무”로 한다.

제17조(「하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를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하 동 군 공 보

(6) 제 41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47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일~목요일	금~토요일, 공휴일 앞날
숙 박	숙박 체험동	김훈장댁(1실 4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35,000	50,000
		김평산네(1실 2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30,000	40,000
	한옥 체험관	1박(1실 4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35,000	50,000
행사장		공공요금 실비	-	-
촬영장		공공요금 실비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p> <p>시 설 사 용 료 (제7조 관련)</p> <p>(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60%;">기 준</th> <th style="width: 15%;">주 중</th> <th style="width: 15%;">주 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숙 박</td> <td style="text-align: center;">1박(1실 2명) 기준 초과시 1명당 2,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옥 체험관 1박(1실 4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행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요금 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촬영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요금 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주 중	주 말	숙 박	1박(1실 2명) 기준 초과시 1명당 2,000원	8,000	10,000	한옥 체험관 1박(1실 4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35,000	50,000	행사장	공공요금 실비	-	-	촬영장	공공요금 실비	-	-	<p>【별표 2】</p> <p>시 설 사 용 료 (제7조 관련)</p> <p>(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60%;">기 준</th> <th style="width: 15%;">일~목요일</th> <th style="width: 15%;">금~토요일, 공휴일 앞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숙 박</td> <td style="text-align: center;">김훈장덕(1실 4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김평산네(1실 2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옥 체험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박(1실 4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행사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요금 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촬영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공요금 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일~목요일	금~토요일, 공휴일 앞날	숙 박	김훈장덕(1실 4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35,000	50,000	김평산네(1실 2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30,000	40,000	한옥 체험관	1박(1실 4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35,000	50,000	행사장	공공요금 실비	-	-	촬영장	공공요금 실비	-	-
구 분	기 준	주 중	주 말																																								
숙 박	1박(1실 2명) 기준 초과시 1명당 2,000원	8,000	10,000																																								
	한옥 체험관 1박(1실 4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35,000	50,000																																								
행사장	공공요금 실비	-	-																																								
촬영장	공공요금 실비	-	-																																								
구 분	기 준	일~목요일	금~토요일, 공휴일 앞날																																								
숙 박	김훈장덕(1실 4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35,000	50,000																																								
	김평산네(1실 2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30,000	40,000																																								
한옥 체험관	1박(1실 4명) 기준 초과시 1명당 10,000원	35,000	50,000																																								
행사장	공공요금 실비	-	-																																								
촬영장	공공요금 실비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48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중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를 “2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u>월 5만원 지급</u> 2. 참전유공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4조(지원사업)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월 10만원 지급 2. ~ 3. (현행과 같음)
<p>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통지)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u>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u></p>	<p>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 ----- ----- 신청일 <u>부터 2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하 동 군 공 보

(10) 제 41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49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간회원” 이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증명 서류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18조를 제17조에서 제19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각종 서식)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11) 제 414 호

별표 1의 비고란에 다음 사항을 각각 신설한다.

- 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별표 2의 구분란과 감면율란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10%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20%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제7조 관련)

(1인 기준 / 단위 : 원)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비고	
		개인	단체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수영장,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의 80%를 징수한다. ○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한다.
	청소년 및 군인	"	2,500	2,000	40,000	
	일 반	"	3,000	2,500	50,000	
	경로우대 (65세이상)	"	2,000	1,500	30,000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	1,500	1,000	30,000	○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한다.
	일 반	"	2,000	1,500	35,000	
	경로우대 (65세이상)	"	1,000	800	20,000	

하 동 군 공 보

(12) 제 414 호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 (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1]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기간회원이 3개월 이상 동시 등록	10%	
기간회원이 6개월 이상 동시 등록	20%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제9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주 소		전화번호			여()

이용종목	
이용일시	
이용목적	
면제·감면 사유	※ 증명서류 첨부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면제·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 동 군 공 보

(14) 제 414 호

【별지 제8호 서식】

이용료 반환신청서(제10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회원번호	
이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전화번호		
	주 소				
이용 내용	이용 종목				
	등록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이용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금액				
이 용 료 반환사유					
반환처	성 명				
	반환은행 (계좌번호)				
					수수료 없음
<p>「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p>					
<p>하동군수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과 같이 이용료 반환을 결정코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징수액	반 환 결정사항	반 환 결정액	결 재	담당자	담 당
				소 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 ⑦ 생략. ⑧ <신 설></p> <p>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 ③ 생략. 【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1인기준 /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기준</th> <th colspan="2">1회 이용</th> <th rowspan="2">월 회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개인</th> <th>단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수영장</td> <td>어린이 1회 2시간</td> <td>2,000</td> <td>1,500</td> <td>30,000</td> <td rowspan="4">*기준시간 초과 사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수영장, 헬스장 2 종목을 동시에 이용 하는 자는 이용료의 80%를 징수한다. <<신 설> <<신 설></td> </tr> <tr> <td>청소년 및 군인</td> <td>2,500</td> <td>2,000</td> <td>40,000</td> </tr> <tr> <td>일 반</td> <td>3,000</td> <td>2,500</td> <td>50,000</td> </tr> <tr> <td>경로우 대 (65세 이상)</td> <td>2,000</td> <td>1,500</td> <td>30,000</td> </tr> <tr> <td rowspan="3">헬스장</td> <td>청소년 및 군인</td> <td>1,500</td> <td>1,000</td> <td>30,000</td> <td rowspan="3">*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td> </tr> <tr> <td>일 반</td> <td>2,000</td> <td>1,500</td> <td>35,000</td> </tr> <tr> <td>경로우 대 (65세 이상)</td> <td>1,000</td> <td>800</td> <td>20,000</td> </tr> </tbody> </table> <p>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 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한다.</p> <p>【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p>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비고	개인	단체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기준시간 초과 사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수영장, 헬스장 2 종목을 동시에 이용 하는 자는 이용료의 80%를 징수한다. <<신 설> <<신 설>	청소년 및 군인	2,500	2,000	40,000	일 반	3,000	2,500	50,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2,000	1,500	30,000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1,500	1,000	30,000	*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일 반	2,000	1,500	35,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1,000	800	20,000	<p>제2조(정의) ① ~ ⑦ (현행과 같음) 8. “기간회원” 이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 민체육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p> <p>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1인기준 /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기준</th> <th colspan="2">1회 이용</th> <th rowspan="2">월 회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개인</th> <th>단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수영장</td> <td>어린이 1회 2시간</td> <td>2,000</td> <td>1,500</td> <td>30,000</td> <td rowspan="4">*기준시간 초과 사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수영장, 헬스장 2 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의 80%를 징수한다. *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td> </tr> <tr> <td>청소년 및 군인</td> <td>2,500</td> <td>2,000</td> <td>40,000</td> </tr> <tr> <td>일 반</td> <td>3,000</td> <td>2,500</td> <td>50,000</td> </tr> <tr> <td>경로우 대 (65세 이상)</td> <td>2,000</td> <td>1,500</td> <td>30,000</td> </tr> <tr> <td rowspan="3">헬스장</td> <td>청소년 및 군인</td> <td>1,500</td> <td>1,000</td> <td>30,000</td> <td rowspan="3">*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td> </tr> <tr> <td>일 반</td> <td>2,000</td> <td>1,500</td> <td>35,000</td> </tr> <tr> <td>경로우 대 (65세 이상)</td> <td>1,000</td> <td>800</td> <td>20,000</td> </tr> </tbody> </table> <p>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증명서류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면제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 회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p>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비고	개인	단체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기준시간 초과 사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수영장, 헬스장 2 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의 80%를 징수한다. *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청소년 및 군인	2,500	2,000	40,000	일 반	3,000	2,500	50,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2,000	1,500	30,000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1,500	1,000	30,000	*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일 반	2,000	1,500	35,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1,000	800	20,000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비고																																																																									
	개인	단체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기준시간 초과 사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수영장, 헬스장 2 종목을 동시에 이용 하는 자는 이용료의 80%를 징수한다. <<신 설> <<신 설>																																																																												
	청소년 및 군인	2,500	2,000	40,000																																																																													
	일 반	3,000	2,500	50,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2,000	1,500	30,000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1,500	1,000	30,000	*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일 반	2,000	1,500	35,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1,000	800	20,000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비고																																																																												
		개인	단체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기준시간 초과 사마다 기본이용료의 1/2 징수 *단체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수영장, 헬스장 2 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의 80%를 징수한다. *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청소년 및 군인	2,500	2,000	40,000																																																																													
	일 반	3,000	2,500	50,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2,000	1,500	30,000																																																																													
헬스장	청소년 및 군인	1,500	1,000	30,000	*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일 반	2,000	1,500	35,000																																																																													
	경로우 대 (65세 이상)	1,000	800	20,000																																																																													

하 동 군 공 보

(16) 제 414 호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1]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신 설>		
<신 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생략.
② <신 설>

제16조 <신 설>

제16조(위탁관리)

제17조(준용규정)

제18조(시행규칙)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1]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기간회원이 3개월 이상 동시 등록	10%	
기간회원이 6개월 이상 동시 등록	20%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각종 서식) 군수는 필요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제18조(준용규정)

제19조(시행규칙)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치 설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50호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8) 제 41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51호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120호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실장이, 문화관광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과장이, 행정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규정된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장,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재무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하고,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면장,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주민생활지원부서가 없는 면의 경우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면장,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0) 제 414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과장이, 행정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규정된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3. 실과장(사업소장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 내의 주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정책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5. 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주사,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재무업무담당주사, 사회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하고,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주사,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재무부서가 있는 면의 경우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주사,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재무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p>제2조(법정대리)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 문화관광실장이, 문화관광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과장이, 행정과장이----- 3. <현행과 같음> 4. ----- ----- 농축산과장,----- 5. 읍장이----- 부읍장,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재무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하고, 면장이----- 부면장,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주민생활지원부서가 없는 면의 경우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면장,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하동군 고시 제2014-80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75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22.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78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0.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4-80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75차)

우리군 도로명주소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22.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악양면 상중대1길 64-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0.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4-80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75차)

우리군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22.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341-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0.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414 호

성명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시유	송달지주소	우편번호	고지방법
홍순애	경상남도하동군 화개면 탑리541-2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 쌍계로78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하동군 화개면 법하길24-25	667-823	1차
지숙환	경상남도하동군 진교면 고통리37-7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구곡2길31	2009-03-02	구곡이라는 자연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72(성내동)	645-360	1차
전갑순	경상남도하동군 고전면 범아리651	경상남도하동군고전면 범사2길18-1	2008-04-02	떼배기가 떳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고전면 범사2길 18-1	667-804	1차
김삼주	경상남도하동군 청암면 묵계리1308	경상남도하동군청암면 청학로2337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 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청암면 청학동길 82	667-883	1차
김삼주	경상남도하동군 청암면 묵계리1312	경상남도하동군청암면 청학로2337-1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 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경상남도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82	667-883	1차
정은주	경상남도하동군 화개면 범왕리122-2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 화개로941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하동군 화개면 호동길35	667-821	1차
(주)부광	경상남도하동군 북천면 직전리556-23	경상남도하동군북천면 경서대로2453	2009-07-10	2번 국도의 일부로서,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2번길5, 드림501-1(사파동)	645-360	1차
김종필	경상남도하동군 화개면 범왕리1578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 목통길112	2007-06-18	으름이 집단으로 자생한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하동군 화개면 목통길116	667-821	1차
김정주	경상남도하동군 화개면 정금리1051-2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 정금대비길16	2009-03-02	정금과서 대비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행정리명의 명칭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하동군 화개면 쌍계로308	667-823	1차
남순옥	경상남도하동군 옥종면 양구리464-2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뒷돌길109-27	2008-04-02	정수와 접한 미울인데 의양의 뒷돌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하동군 옥종면 신성길15	667-892	1차
황대상	경상남도하동군 양보면 박달리791-2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 세곡길90	2009-03-02	세곡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하동군 양보면 세곡길78	667-852	1차
이봉석	경상남도하동군 북천면 옥정리432-8	경상남도하동군북천면 경서대로2470-1	2009-07-10	2번 국도의 일부로서,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경상남도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2470-3	667-873	1차
배영기	경상남도하동군 옥종면 대곡리618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삼장길123	2008-04-02	연산전대 유명한 조지서가 생장한 곳인데 지족당이 3번 장원을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김해시 진영읍 서부로283-31	621-801	1차
김정우	경상남도하동군 악양면 상중대1길46-84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 상중대1길64-1	2009-03-02	중대리 윗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악양면 상중대1길 46-84	667-811	1차
구본윤	경상남도하동군 금성면 갈사리977	경상남도하동군금성면 내도청도길23	2009-03-02	내도와 청도의 자연마을 이름을 합성하여 내도청도길로 명명	경상남도하동군 하동읍 중앙길1	667-804	1차
문창호	경상남도하동군 진교면 양포리994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발꾸미길55-12	2007-06-18	발꾸미라는 마을이름 반영	부산광역시강서구 공항로15번길16 (명지동)	618-813	1차
여태후	경상남도하동군 하동읍 화심리973-10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 섬진강대로2566-11	2009-07-10	19번국도의일부로서, 섬진강을 따라형성된도로로 지역명 반영	경상남도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2566-8	667-802	1차

하동군 고시 제2014 - 81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제8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하 동 군 수

1. 고 시 명 : 하동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2. 대 상 지 :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716-2번지 외 117개소(붙임내역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4. 고 시 일 : 2014. 10. 28.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 산림토목담당(055-880-24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

하 동 군 공 보

(26) 제 414 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내역

심의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지 정 면 적 (㎡)	소유자		비 고
	군	읍면	리					성명	주소	
계				118필지		6,835,988	703,326			
제2014-1호	하동	고전	대덕	716-2	구	13,795	1,663	국		
제2014-2호	하동	고전	상천	1201	구	17,874	2,225	국		
제2014-3호	하동	고전	상천	433	입	1,604	1,265	정**	하동군 고전면 상천리 330	
제2014-4호	하동	고전	상천	산151-8	구	50	50	정**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337-3	
제2014-5호	하동	고전	상천	산271-2	입	61,470	1,040	김**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7-112	
								김**	하동군 고전면 상천리 251	
								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33	
								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94	
제2014-6호	하동	고전	성평	733	구	12,493	4,052	국		
제2014-7호	하동	고전	성평	733	구	12,493	12,493	국		
제2014-8호	하동	고전	신월	1058-4	도	83	83	성***	하동군고전면신월리1036	
제2014-9호	하동	고전	신월	1464-5	구	2,846	1,150	국		
제2014-10호	하동	고전	신월	293	전	449	449	조**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296	
제2014-11호	하동	고전	진도	548-1	전	2,995	2,995	국		
제2014-12호	하동	북천	방화	1002-5	구	11,394	1,000	국		
제2014-13호	하동	북천	방화	1002-5	구	11,394	11,394	국		
제2014-14호	하동	북천	서황	1317	도	119	107	국		
제2014-15호	하동	북천	서황	산26	입	103,934	1,439	강**	부산 남구 망미동 444-7	
								기****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502	
제2014-16호	하동	북천	화정	714	답	2,529	1,524	김**	인천시 남동구 간석로 86-1, 201호	
제2014-17호	하동	북천	화정	산127-1	입	962	962	김**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306	
제2014-18호	하동	북천	화정	산36	입	18,645	18,645	주식회사 범*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92	
제2014-19호	하동	악양	동매	143	답	618	618	갈**	하동군 악양면 동매길 16-51	
제2014-20호	하동	악양	동매	47-2	답	182	182	최**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68-12, 212동 403호	
제2014-21호	하동	악양	동매	912	하 천	60,066	3,381	국		
제2014-22호	하동	악양	등촌	811	입	3,302	3,302	이**	서울 도봉구 창동 316 주공아파트 205동 207호	
제2014-23호	하동	악양	등촌	954	하 천	3,858	2,718	국		
제2014-24호	하동	악양	매계	1014	도	400	356	국		
제2014-25호	하동	악양	매계	산12-1	입	22,116	1,093	한**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826	
								정**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74-1	
제2014-26호	하동	악양	미점	63	답	1,175	300	박**	서울시 양천구 목동 743-26 하이텔파크빌 402	

하 동 군 공 보

(27) 제 414 호

제2014-27호	하동	악양	신흥	973	구	26,995	400	국		
제2014-28호	하동	악양	신흥	산11-1	임	5,931	5,931	김**	진주시 칠암동 531-14	
제2014-29호	하동	악양	신흥	산20-3	임	2,398	2,398	대*****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21-120	
제2014-30호	하동	악양	신흥	산54	임	25,569	1,400	윤**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53-1	
제2014-31호	하동	악양	정서	산43	임	2,678	835	박**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841	
제2014-32호	하동	악양	정서	산71-1	임	3,669	566	박**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666	
제2014-33호	하동	악양	중대	808	임	701	400	강**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579	
제2014-34호	하동	악양	축지	1056	구	3,127	410	국		
제2014-35호	하동	악양	축지	632	전	132	132	김**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612	
제2014-36호	하동	악양	축지	682	답	552	552	김**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504	
제2014-37호	하동	악양	평사	632	전	383	383	오**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438	
제2014-38호	하동	양보	우복	118	답	945	945	김**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09	
제2014-39호	하동	양보	우복	산154	임	11,604	156	김**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380-33	
제2014-40호	하동	양보	장암	산253	임	134,380	638	배**	서울 강남구 방배동 988-1 신동아아파트 7동 607호	
제2014-41호	하동	양보	장암	산74-1	도	669	200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제2014-42호	하동	옥중	궁항	1317	구	251,319	251,319	국		
제2014-43호	하동	옥중	궁항	1319	구	8,972	8,972	국		
제2014-44호	하동	옥중	두양	1073-204	하 천	43,480	600	국		
제2014-45호	하동	옥중	두양	1073-204	하 천	43,480	2,282	국		
제2014-46호	하동	옥중	두양	1073-204	하 천	43,480	43,480	국		
제2014-47호	하동	옥중	두양	산4	임	10,047	222	김**	진주시 진주대로 1070번길 3	
								김**	양산시 물금읍 목화1길 8-17	
								배**	양산시 물금읍 목화1길 8-17	
제2014-48호	하동	옥중	월횡	167	대	192	192	최**	통영시 도천동 916-7	
제2014-49호	하동	적량	고절	899	전	952	889	박**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862-6	
제2014-50호	하동	적량	고절	산90	임	8,609	738	유**	광양시 금호동 684 목련빌라 36동 301호	
제2014-51호	하동	적량	동	1451	구	1,692	1,581	국		
제2014-52호	하동	적량	동산	476	임	569	569	(재)영**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산102	
제2014-53호	하동	적량	동산	산94	임	2,988	1,467	광*****	하동군 양보면 예성길 63-5	
제2014-54호	하동	적량	우계	2211-29	구	2,469	536	국		
제2014-55호	하동	진교	고이	1241-10	구	14,624	1,288	국		
제2014-56호	하동	진교	월운	1237-1	구	17,808	17,808	국		
제2014-57호	하동	진교	월운	500	구	1,778	1,358	국		
제2014-58호	하동	청암	목계	1749	하 천	194,774	4,435	국		
제2014-59호	하동	청암	목계	산48	임	47,702	2,075	이**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103	
제2014-60호	하동	청암	상이	1996	하 천	98,681	4,586	국		
제2014-61호	하동	청암	상이	산4-1	임	6,520	6,520	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59, 901호	
제2014-62호	하동	청암	중이	산143-2	임	15,570	241	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12-1005	
제2014-63호	하동	청암	평촌	1365	구	11,830	1,422	국		

하 동 군 공 보

(28) 제 414 호

제2014-64호	하동	청암	평촌	858-1	답	403	403	이**	진주시 천수로 163번길 2-15
제2014-65호	하동	청암	평촌	907-2	답	185	185	이**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596
제2014-66호	하동	청암	평촌	산200	임	6,545	6,545	소**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40
제2014-67호	하동	청암	평촌	산42-3	임	9,999	1,148	황**	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323 별장아파트 101호
								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85
제2014-68호	하동	하동	두곡	1346	답	3,127	1,338	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2-8
제2014-69호	하동	하동	두곡	1610	구	15,749	821	국	
제2014-70호	하동	하동	비파	882	구	4,268	756	국	
제2014-71호	하동	하동	읍내	1549	도	17,135	288	국	
제2014-72호	하동	하동	홍룡	1741	구	81,365	2,400	국	
제2014-73호	하동	하동	홍룡	1741	구	81,365	2,772	국	
제2014-74호	하동	하동	홍룡	1741	구	81,365	2,112	국	
제2014-75호	하동	하동	홍룡	613	답	4,922	1,505	김**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428-11 홍룡빌라 가-201
제2014-76호	하동	하동	홍룡	628-5	도	182	403	하**	하동군 하동읍 홍룡리 1454
제2014-77호	하동	화개	덕은	954	하 천	311,792	752	국	
제2014-78호	하동	화개	덕은	산156-1	임	44,430	82	전**	서울 성동구 사근동 314 벽산아파트 101동 1903호
								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176 목련마을 성환빌라 202-302
								전**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1 신동아아파트 19-202
								전**	의왕시 내손동 771 반도보리빌리 지 1단지 108-1502
								전**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194-12 윤성아파트 2-212
제2014-79호	하동	화개	덕은	산8-1	구	1,746	420	국	
제2014-80호	하동	화개	덕은	산94-1	임	18,942	101	김**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16
								상 ****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777
제2014-81호	하동	화개	범왕	1523	전	291	291	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0 대우마리나 201동 404호
제2014-82호	하동	화개	범왕	1542	답	132	132	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544
제2014-83호	하동	화개	범왕	1920	하 천	79,081	107	국	
제2014-84호	하동	화개	범왕	1920	하 천	79,081	2,204	국	
제2014-85호	하동	화개	범왕	1953	하 천	13,388	128	국	
제2014-86호	하동	화개	부춘	1165	하 천	683,250	222	국	
제2014-87호	하동	화개	부춘	1165	하 천	683,250	810	국	
제2014-88호	하동	화개	부춘	63-6	답	1,104	200	박**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63
제2014-89호	하동	화개	부춘	산101-1	임	17,584	76	이**	광양시 중동 1655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101동 1501호
제2014-90호	하동	화개	부춘	산117-1	임	991	700	손**	부산 서구 토성동1가 14

하 동 군 공 보

(29) 제 414 호

제2014-91호	하동	화개	부춘	산201-1	임	35,603	128	이**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849
제2014-92호	하동	화개	부춘	산47-3	임	53,851	370	허**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256
								서**	부산 금정구 서동 158-7
								허**	부산 남구 망미동 831-24
제2014-93호	하동	화개	삼신	1000	도	1,088	55	국	
제2014-94호	하동	화개	삼신	477	전	436	71	송**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230
제2014-95호	하동	화개	삼신	971	하천	5,124	82	국	
제2014-96호	하동	화개	삼신	990	구	24,033	330	국	
제2014-97호	하동	화개	용강	1368	구	7,157	101	국	
제2014-98호	하동	화개	용강	산195	임	71,207	240	정**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297-1
제2014-99호	하동	화개	운수	855	하천	11,655	241	국	
제2014-100호	하동	화개	운수	876	하천	8,165	420	국	
제2014-101호	하동	화개	운수	산102-5	임	123,041	700	구**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43-3
제2014-102호	하동	화개	운수	산47-1	임	2,517,500	101	대*****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
제2014-103호	하동	화개	정금	1165-2	답	1,435	1,435	정**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166
제2014-104호	하동	화개	탑	96-1	구	1,451	65	국	
제2014-105호	하동	화개	탑	산25	임	5,849	432	이**	하동군 화개면 탑리 117
제2014-106호	하동	횡천	남산	1219	구	2,077	784	국	
제2014-107호	하동	횡천	남산	산190-4	임	15,749	600	박**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34-108
제2014-108호	하동	횡천	월평	1104	구	13,543	1,704	국	
제2014-109호	하동	횡천	월평	135-4	목장	586	586	이**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142
제2014-110호	하동	횡천	월평	산36-1	임	12,496	936	문**	부산 동구 수정3동 771-11 협성파크 1동 608호
제2014-111호	하동	횡천	월평	산42	임	13,748	1,710	김**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110
제2014-112호	하동	횡천	전대	1350-39	구	30,917	2,000	국	
제2014-113호	하동	횡천	학	1148	도	1,714	88	국	
제2014-114호	하동	횡천	학	1149-2	구	1,568	1,568	국	
제2014-115호	하동	횡천	학	산168-1	구	3,928	3,928	국	
제2014-116호	하동	횡천	횡천	1044	구	2,053	1,108	국	
제2014-117호	하동	횡천	횡천	1154-10	구	214,000	214,000	국	
제2014-118호	하동	횡천	횡천	833-1	답	227	227	국	

하동군 공고 제2014-660호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2. 제안 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시행(14.06.30)으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범위 확대 (안 제5조)
 -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하동군 (참조 :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전화 880-2035, FAX 880-2019, e-mail : smooth552@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1. 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붙임 1>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 소속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32) 제 414 호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5. <u>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6. <u>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7.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관계법령)

제 정 2008. 4. 17. 예규 제 6호
 전부개정 2008. 12. 31. 예규 제17호
 개 정 2009. 8. 24. 예규 제28호
 개 정 2011. 9. 30. 예규 제40호
 개 정 2012. 2. 29. 예규 제47호
 개 정 2012. 8. 14. 예규 제51호
 일부개정 2013. 6. 21. 예규 제62호
 일부개정 2014. 6. 30. 예규 제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부·처·청의 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4. “지방의회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5. “교육위원회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말한다.
6.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7.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하 동 군 공 보

(34) 제 414 호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유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
3. 교육위원회 : 「(기관명) 위원 행동강령」
4.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 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3.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4.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36) 제 414 호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38) 제 414 호

제21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 2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개정 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 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6호, 2008.4.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7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7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기관별 행동강령은 이 예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17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제정된 기관별 행동강령은 이 예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5호, 제5조제3호, 제4조 및 제6조 중 “교육위원회” 관련 부분은 20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하 동 군 공 보

(40) 제 414 호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8호, 2009.8.24.>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40호, 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등은 이 예규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47호, 2012.2.29.>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51호, 2012.8.14.>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등 4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일부개정훈령)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5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공고 제2014-669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 제안 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2014. 5. 28 공포)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경우 외에는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

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 금지함(안 제5조제2항)

-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마.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함(안 제13조부터 26조까지)

바.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감사실 전화880-2024, FAX 880-2019, e-mail : parkeejj@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 414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하동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다.
- ④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하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46) 제 414 호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국제통상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하 동 군 공 보

(48) 제 414 호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지방보조사업의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으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16조에 따른 교부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지급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50) 제 414 호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폐지 승인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액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 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

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및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